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
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1월 11일 이광희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(안 제 1조 및 제2조)
- 경술국치일(8월 29일)에 조기게양을 명시함(안 제3조)
- 국기의 선양과 국기 보급사항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 (안 제4조~ 제6조)

4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국기 게양일의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사무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5조 제2항에서는 국기의 제작·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주체로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’를 규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국기선양사업 추진·지원의 주체로 ‘안전 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’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 제5조, 제6조는 국기의 보급사업과 국기선양을 위해 개인·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년간 총 710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비용을 추계하였음.
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·보조·출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예외적으로 도의 재정상황, 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1항 제5호에서는 “지방자치 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”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타당

하다고 판단되나,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“경술국치일”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- 그러나 이미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 중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경술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을 한 바 있으며, 우리 충청북도가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8개의 광역자치시도(47%)가 경술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제정하는 것이 되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